

월별	지방세		국세
	도세	시·군세	
1월	· 자동차세(소유분) 연세액 일시납부(1.31한) · 9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(1.31.한)	· 등록면허세(면허분) (1.31한)	·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(1.25.한)
3월	· 자동차세(소유분) 연세액 일시납부/분할 납부(3.31한)		·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(3.31.한)
4월	· 12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(4.30.한)		·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(4.25.한)
5월	· 지방소득세(소득세) 신고납부(5. 31한)		· 소득세 확정신고 (5.31.한)
6월	· 자동차세(소유분) 납기 (6. 30한) · 자동차세(소유분) 연세액 일시납부/분할 납부(6.30한)		·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(6.30.한)
7월	· 주민세(재산분) 납기 (7.1~7.31) · 지역자원시설세(특정 부동산분)납기(7.16~7.31) · 3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(7.31.한)	· 재산세 [주택(1/2)·건축물분, 선박, 항공기] 납기 (7.16~7.31) ※ 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일괄 부과·징수	·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(7.25.한)
8월	· 주민세(개인분,사업소분) 납기(8.16~8.31/ 8.1~8.31.)		

월별	지방세		국세
	도세	시·군세	
9월	- 지역자원시설세(특정 부동산분) 납기(9.16~9.30) - 자동차세(소유분) 연세액 일시납부/분할납부(9.30.한)	재산세[주택분(1/2), 토지분] 납기 (9.16~9.30)	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(9.30.한)
10월	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(10.31.한)		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(10.25.한)
11월			종합소득세 중간예납 (11.30한)
12월	- 자동차세(소유분) 납기 (12.16~12.31) - 자동차세(소유분) 분할납부(12.31.한)		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(12.31.한) - 종합부동산세 납기 (12.1~12.15)
매월	- 지방소득세(특별징수)(10.한) - 주민세(종업원분)(10.한) - 레저세(10.한) -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자원분) (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) - 담배소비세(다음 달 말일 한) - 자동차세(주행분) (다음 달 말일 한) - 지방소비세(부가가치세와 동일)		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(다음 달 말일 한) - 원천징수 소득세 등 (다음 달 10.한)
수시	- 취득세 (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) -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- 무신고·과소신고분 수시부과 -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	- 등록면허세(각종 등기·등록 및 인·허가를 받을 때) - 무신고·과소신고분 수시부과 -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	- 무신고·과소신고분 수시부과 -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

※ 신고,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, 토요일이거나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.